

---

## WTO/TBT협정하에서 알코올 라벨링에 대한 국제적 조화 가능성에 관한 연구

양정미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 강사

---

### A study for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harmonization on alcohol labelling under WTO/TBT

Jung-Mi Yang<sup>a</sup>

<sup>a</sup>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uth Korea

Received 19 April 2019, Revised 28 April 2019, Accepted 29 April 2019.

---

#### Abstract

This paper determines if mandated alcohol health information labelling could be an obstacle to international trade by discussing international trade rules affecting member nations.

WTO members could use alcohol labelling rules to protect human health, reduce the consumption of alcohol and provide product information. When a member uses alcohol labelling as a technical regulation or standard, it should comply with TBT Articles 2.2 and 2.4. If a member uses some specific warning messages for their objectives, it should be considered the contribution of the measure, trade restrictiveness, and alternatives.

If WTO members want to employ their own alcohol labelling schemes for addressing carcinogenicity, intoxicating effects, dependence potential, effects on children, adolescents and pregnancy, it could be a technical barrier and also create adverse effects on international trade. Therefore, the harms of alcohol are supported by scientific evidence, and for this reason, the international harmonization for alcohol labelling should be discussed openly to prevent negative effects on trade.

---

**Keywords:** Alcohol labelling, TBT, Warning message, Legitimate objective

**JEL Classifications:** F13, F18

---

<sup>a</sup> First Author, E-mail: [ilove97@pusan.ac.kr](mailto:ilove97@pusan.ac.kr)

## I. 서론

2010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알코올 관련 위해성을 나타내는 주류 라벨링의 권고와 함께 알코올의 소비를 줄이기 위한 글로벌 알코올 전략(Global Alcoho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을 발표하였다(WHO, 2010). 알코올 관련 피해는 급성·만성 건강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Flaxman, Goodarzm, Heather, Kenji, Lim and Vos, 2012). 알코올의 유해성은 단기적으로는 알코올 중독을 야기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간경변, 심장병 그리고 암을 유발시킬 수 있다(Flaxman, Goodarzm, Heather, Kenji, Lim and Vos, 2012).

주류 산업에서는 정부가 강제하는 조치가 알코올을 지나치게 소비하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알코올의 단순 소비자까지 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주 경고는 음주 습관(drinking behavior)을 변화시키기에는 효과적이지 않음을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 건강 경고, 칼로리 그리고 영양정보에 대한 자체적인 라벨링 제도를 해당 산업에서 운영하고 있고, 자체 규제조치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음 또한 주장하고 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알코올에 대한 성분표, 칼로리 정보, 영양 성분, 알코올 함량 또는 표준 주류의 수와 같이 주류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건강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IARD, 2018), 알코올 라벨링과 관련하여 최근 TBT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와 제안이 있었지만, 아직 알코올 라벨링에 대한 국제적인 표준이 존재하지 않기에 WTO회원국의 특정 알코올 라벨링 요건은 국제무역에 장애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히 존재한다.

이에 해당 연구는 주요 주류 수출국(유럽, 미국, 칠레, 멕시코, 호주 그리고 뉴질랜드 등)의 알코올 또는 관련 산업에서 제기된 알코올 건강 정보 라벨링의 위협을 검토하고, 2010년부터 2018년까지 TBT위원회에서 논의된 알코올 라벨링 관련 제안 중 가장 논쟁이 된 제안의 특징을 TBT협정을 근거로 살펴보고자 한다. 지금

까지 알코올 라벨링 관련 WTO회원국들 간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정 회원국이 어떠한 형태로든 알코올 라벨링을 강제한다면 분쟁의 가능성이 존재하기에 마지막으로 알코올 라벨링의 표준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과 조화의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건강 정보에 대한 알코올 라벨링의 위협

1989년부터 현재까지 사용 중인 미국의 연구 결과는 가장 오래된 알코올 경고 중 하나로 해당 경고는 다음과 같은 문자만으로 표시되어 있다; 'GOVERNMENT WARNING: (1) 연방의 무감에 따르면, 태아의 선천적 장애의 위험으로 여성은 임신 중 술을 마시지 않아야 한다. (2) 주류의 소비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기계 조작 능력을 떨어뜨리고 건강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CFR Title 27; §16.21, 2006) 해당 요건들은 도입된 이후 변하지 않았고, 알코올 경고 라벨링 제도에 대한 더 이상의 연구도 없으며, 칼로리 함유 정보와 성분표처럼 알코올 건강 정보 라벨링의 효과를 보여주는 연구도 없었다(CFR Title 27; §16.22, 2006).

지금까지 알코올 라벨링에 대한 정부의 상대적인 관심의 부재와 설득력이 없는 증거 기반에도 불구하고, 국제무역에서 알코올 특히 와인과 증류주는 주요 수출 상품이 되었다. 전 세계 와인 교역은 2016년 290억 유로로, 이는 약 1,060억 헥타르에 해당하며 세계적으로 생산된 와인의 1/3에 달한다(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Vine and Wine, 2017). 2015년,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고 프랑스는 전 세계 와인 시장의 56%를 생산함으로써 최대의 수출자들이었으며, 칠레(8.2%), 호주(7%), 남아프리카공화국(4.2%), 미국(4%), 독일(3.9%), 포르투갈(2.8%), 아르헨티나(2.6%) 그리고 뉴질랜드(1.9%)가 뒤를 이었다(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Vine and Wine, 2017). 주류 산업과 주요 와인 및 증류주 수출업자들은 전체 알코올 섭취를 감소시킬 수 있는 라벨링을 포함하여 어떠한 정책의 도입도 원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수출업자들에게는 현재 진행 중인 알코올 라벨링에 대한 논의가 주요 관심사일 수밖에 없으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비록 현재 사용되는 라벨링 제도의 증거들이 소비자의 음주습관을 바꾸기에 강력하진 않지만, 기존의 담배경고라벨의 연구에서 그러하였던 것과 같이, 새로운 연구는 호주와 같은 국가에서 담배 경고 라벨에 사용되고 있는 것과 유사한 특성들을 알코올 라벨링에도 도입한다면 알코올 건강 경고가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O'Brien, Gleeson, Room and Wilkinson, 2017). 이는 용기 라벨에 명확하고 상세한 문자 또는 순환적으로 교체(rotation)되는 그래픽의 사용은 기존의 라벨링 제도에 비해 알코올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을 변화시킴에 있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Foundation for Alcohol Research and Education, 2011).

주류 산업에서는 알코올 라벨링이 음주습관의 변화 보다 알코올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잠재력을 염려하고 있다. 만약 알코올 섭취에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경고가 라벨로 명시된다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알코올을 일반적인 재화로 여기지 않을 것이며(Babor, 2010), 해당 제품에 잠재적인 위험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지된다면 주류 산업의 해당 메시지는 담배를 피우는 것 또는 과체중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Room, Rehm and Parry, 2011). 이에 소비자의 알코올 수요가 주류 산업의 판매축진(Room, Rehm and Parry, 2011)을 통해 형성되며 아직 견고하지 않은 신흥 알코올 시장에서는 이러한 라벨의 표현기능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있다.

주류 산업은 라벨링, 세금, 마케팅 제한 그리고 소비의 제한과 같이 파급력을 가진 조치가 알코올을 많이 소비하는 문제있는 음주자 뿐만 아니라 모든 음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건강정보 라벨링은 잠재된 음주자에게 그 위험을 알림으로써 비-음주자에게도 그 영향력이 직결된다. 해당산업의 입장은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책임감 있게 음주하기에 교육적인 메시지를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소비자들에 대한 간섭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간섭은 의료간섭,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또는 음주 후 피해의 야기와 같은 적절한 간섭과 함께 음주를 적절치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류 산업은 지난 40년 동안 서방국가들에서 흡인력을 가졌던 담배규제에 대한 강력한 접근법이 알코올과 관련된 논의에 영향을 줄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담배에 대한 정부규제가 담배문화라는 의미를 변화시켰고, 담배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 성공적인 규제 개입을 알코올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잠재력 뿐만 아니라 정부 개입이 심한 국가에서 흡연률의 상당한 감소를 위해 사용된 조치들의 누적된 효과가 수년간 축적되어 나타나고 있기에 알코올에도 유사한 의미로 접근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면, 호주는 1973년에 담배의 건강경고를 처음으로 도입하였고 2012년 담뱃갑 단순포장법(Plain Packaging Law)을 도입하여 경고, 마케팅 제한, 세금 인상 그리고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같은 형태로 다수의 규제 간섭을 하고 있다(Department of Health, Australia, 2018). 주류 산업이 정부의 강제적인 라벨링 도입을 반대하는 것은 알코올 규제가 담배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아갈 잠재성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알코올 마케팅에 대한 더 많은 제한과 세금의 부과는 1970년대부터 제기되었고 Global Alcohol Strategy도 그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Bruun, 1975), 알코올의 단순 포장법은 최근 UK정부의 보건복지부에서 고려할 만한 아젠다로 상정됨으로써 그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Public Health England, 2016).

### Ⅲ. 알코올 라벨링 관련 WTO 회원국의 우려

#### 1. 경고메세지의 내용

특정 WTO회원국이 채택한 알코올 관련 경고 메시지는 해당 라벨에 대한 다른 회원국들의 수용가능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른 회원국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하다. 음주

자체가 문제라고 제안하는 경고는 해당 조치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 보다 더 무역제한적이기 때문에 반대된다. 예를 들면, 태국은 ‘음주는 간경변증을 유발한다 (drinking alcohol causes liver cirrhosis)’라고 라벨에 명시하였다. 많은 국가들은 단지 알코올의 ‘위험한’ 또는 ‘과도한 소비’일 경우 문제가 되고(WTO Doc G/TBT/M/52, 2010), ‘적당한’ 소비는 건강에 이롭다는 것을 근거로 이러한 라벨의 사용을 반대하였다(WTO Doc G/TBT/M/70, 2016). 멕시코는 태국의 경고 메시지가 건강에 이로운 알코올의 소비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WTO Doc G/TBT/M/50, 2010). 유사하게, ‘알코올의 소비는 건강에 해롭다(consumption of alcohol is injurious to health)’라는 인도의 경고 라벨은 ‘알코올의 소비는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consumption of alcohol can be injurious to health)’로 수정할 것이 권고되었다(WTO Doc G/TBT/M/71, 2017).

알코올의 소비와 관련된 위해성은 TBT위원회에서 상당한 논의의 대상되어 왔다. 회원국들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에 반대하는 경고에 대해서는 그러한 위해성을 용인하는 듯하지만, 알코올이 간경변, 자살, 성 기능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이 있다는 경고내용에 대해서는 정당화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를 계속하여 요구하여 왔다(WTO Doc G/TBT/M/51, 2010; WTO Doc G/TBT/M/50, 2010).

암과 알코올 소비에 대한 한국의 경고 또한 TBT 위원회의 논의 대상이었다. 한국의 경고 중 하나는 ‘지나친 음주는 간경화나 간암을 일으키며, 운전이나 작업 중 사고발생률을 높입니다.’로 명시하고 있다. 역학연구는 가족력, 유전인자, 생활방식 그리고 환경요인을 포함하여 광범위한 암 위험 요소들을 지적하고 이에 멕시코는 해당 경고가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WTO Doc G/TBT/M/70, 2016). 그러므로, 해당 경고 메시지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과학연구의 결과가 보여주는 적당한 알코올의 소비는 건강한 생활방식의 중요한 부분

이라는 사실과 결을 달리한다(WTO Doc G/TBT/M/70, 2016). 호주는 멕시코의 지적에 추가하여 해당 문제에 대해 과학적 합치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해당 라벨을 초안할 것을 요구하였다(WTO Doc G/TBT/M/70, 2016).

## 2. 그래픽 경고 라벨

회원국들은 알코올의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기반 없이 문자뿐만 아니라 그림 경고를 삽입한 태국의 라벨은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것 보다 더 무역 제한적인 조치라고 주장하였다. 태국이 제안한 이미지는 셔츠를 벗어 던진 한 남성이 여성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때릴 듯 주먹을 높이 쳐들고 있는 모습이나 자살을 시도한 사람의 양 발이 허공에 떠있는 모습처럼 분명하고 잠재적인 고통을 보여주었다(European Alcohol Policy Alliance, 2010). 태국이 라벨링을 제안한 이후, 특히 미국은 캐나다 태국처럼 그림을 포함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함으로써 우려를 나타냈지만, TBT위원회가 그러한 그래픽 라벨의 사용을 우려하기 전까지 통보는 없었다(WTO Doc G/TBT/M/54, 2010). 또한 터키도 그림문자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에 회원국들은 비난하였지만, 주류 산업은 현재 터키 라벨이 커버하는 특정한 위험 즉 음주운전과 임신 중 음주와 같은 상황에 대한 그림문자의 사용은 지지하고 있다. 그러므로 라벨에 대한 정확한 실사를 사용하는 것과 그림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해당 산업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 3. 디자인 요건

회원국이 엄격한 디자인 요건을 라벨링 제도로 제안한다면, 그 제안에 대해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가 야기될 것이다. TBT위원회에서는 해당 사안이 불필요한 무역 제한과 브랜드 및 마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회원국들은 알코올 라벨의 경고가 합법적이고, 해당 경고가 용기의 표면적 상당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태국은 포장 표면적의 30-50%에 해당 경고를

표시하고, 케냐는 30%를 표시하고자 하였다.

미국은 상표 및 다른 생산자들의 제품과 구별되는 정보를 표시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남지 않는다는 이유로 두 회원국의 규칙에 강력하게 반대하였고(WTO Doc G/TBT/M/57, 2012), 태국에 사이즈 규칙을 지지하는 과학적 기반을 공유하도록 요구하였다(WTO Doc G/TBT/M/53, 2011). EU 또한 라벨 사이즈 요건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현하였다. 멕시코는 알코올 관련 위해성을 줄이는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소한의 사이즈를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고(WTO Doc G/TBT/M/50, 2010), 칠레는 라벨 공간의 15% 이하에 경고 표시가 되어야 함을 표현하였다(WTO Doc G/TBT/M/50, 2010).

전면 라벨로써 경고 정보가 강제된다면, 제조업자가 어디에 라벨을 할지에 대한 선택권이 상실되므로 이와 관련한 추가적인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캐나다는 생산자들이 원산지등을 표시하고, 만약 해당 제품이 수입되었다면 뒷면에 국가의 특정 정보를 명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관행과 상충되는 에콰도르의 제안 즉 용기전면에 해당 정보를 명시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을 지적하였다(WTO Doc G/TBT/M/65, 2015). EU는 이스라엘의 제안인 전면용기요건은 해당 제품의 수입에 비용과 부담이 됨을 주장하였고(WTO Doc G/TBT/M/60, 2013), 이후 이스라엘은 해당 요건을 제거하였음을 TBT위원회에 통보하였다(WTO Doc G/TBT/M/61, 2013).

글자 크기, 서체(font), 배치(layout) 그리고 라벨의 디자인처럼 다른 서식 설정요건의 도입에 관한 우려 또한 TBT위원회에서 있었다. 터키는 이러한 특성들에 대해 상당히 높은 규범을 제안하였고, 이에 EU는 라벨내용, 서식 그리고 배치요건이 과도함을 언급하여(WTO Doc G/TBT/M/61, 2013), 이후 터키는 일부 포장에 경고의 크기를 줄였다(WTO Doc G/TBT/N/Tur/41/Add.2, 2014).

#### 4. 경고라벨의 순환적 교체(rotation)

경고라벨의 순환적 교체는 국제무역에 상당히 부담을 야기시킨다. 태국은 매 1,000명마다 라벨의 순환적 교체를 제안하였고, 이것이 부담으로 작용될 것임을 우려한 미국의 의견을 호주 또한 지지하였다(WTO Doc G/TBT/M/51, 2010). 미국은 해당 요건으로 인해 매 3-4 분마다 제품 생산의 중단 및 변경이 필요하고, 이것은 제품 공정에 상당한 방해와 제조업자의 상당한 어려움을 야기할 것임을 주장하며, 해당 교대요건에 대한 과학적 정당성을 제공할 것을 태국에 요청하였다(WTO Doc G/TBT/M/53, 2010). 매 50개의 포장마다 라벨을 바꿔야 한다는 케냐의 요건은 태국의 제안보다 더 과도한 부담이기에 멕시코와 미국은 이에 반대하였다(WTO Doc G/TBT/M/53, 2010).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2007년부터 경고 라벨을 사용하였고, 제조업자들이 일련의 라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7개의 라벨이 12개월 동안 정확히 균형적으로 생산되도록 라벨의 교체를 제안하였다. 이것은 생산자가 더 이상 그들이 선호하는 경고를 문구로 선택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EU와 캐나다 모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새로운 규칙이 상대적으로 많은 물량을 수출하지 않는 중소생산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고(WTO Doc G/TBT/M/68, 2016), EU 또한 이러한 규칙이 유통기한(long shelf life)이 긴 제품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질의하였다(WTO Doc G/TBT/M/68, 2016).

#### 5. 스티커 또는 보충적 라벨의 사용

특정 회원국이 강제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은 TBT위원회에서 EU와 미국 간 긴장의 원천이었을 뿐만 아니라 2014년 이후 TBT위원회에서 인도와 회원국들 간의 끊임없는 주제였다. 성분표, 영양 정보, 품질유지기간에 대한 정보 그리고 경고를 포함한 인도의 라벨링 제안을 이행하기 위해 스티커 부착을 허용하라는 회원국들의 요청을 인도는 거

절하였다. EU와 다른 국가들은 인도가 고수하고 있는 스티커 요건에 대해 관련된 국제 표준이 있음을 주장하였고,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하지 않는 한 관련 국제표준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TBT협정 제2.4조의 요건과 인도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음을 시사하였다. EU는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이 원래의 라벨 언어(origin label language)가 소비자들에게 적합하지 않을 때, 소비자들에게 적합한 언어로 해당 정부가 강제한 정보를 포함하여 보충라벨을 재-라벨하는 것이 아니라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명시하는 Codex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 (Codex-Standard 1-1985)를 인용하였고, 재-라벨 또는 보충라벨 어떠한 경우라도, 제공된 강제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하게 원래의 라벨을 그대로 반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다(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981). EU는 스티커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제공된 정보는 인도가 무역제한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정당한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좋은 대안이 됨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EU의 제안에 다른 회원국들도 의견을 같이 하였다(WTO Doc G/TBT/M/68m 2016). 스위스는 스티커를 허용하지 않는 인도의 이러한 제한적인 조치로 인해 기업이 인도시장으로부터 철수할 것임을 주장하였고(WTO Doc G/TBT/M/64/Rev.1, 2014), 일본은 불필요한 무역의 혼란을 피하고 소비자 보호 및 정확하지만 쉽게 분리되지 않는 방법으로 스티커가 부착된 식품을 허용하고 있음을 언급하였고, 많은 다른 국가들도 Codex의 표준이 실질적인 세계 관행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주장하였다(WTO Doc G/TBT/M/64/Re v.1, 2014).

처음 인도는 라벨이 부정확한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조작되어 부도덕한 무역업자의 남용을 우려하여 모든 스티커 부착을 거절하였다((WTO Doc G/TBT/M/64/Rev.1, 2014). 또한 소비자의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가 스티커를 사용함으로써 적당히 타협될 수 있다는 것과 주류를 규율하는 국제적인 표준이 없다는 것이 인도의 주장이었다(WTO Doc G/TBT/M/64/Rev.1, 2014). 최근 수입자 정보와 같은 일부

라벨 정보에 대한 스티커의 사용을 허용하였고, 경고, 성분표 그리고 영양 라벨링은 여전히 스티커 부착이 허용되지 않는다((WTO Doc G/TBT/M/64/Rev.1, 2014).

## 6. 생산자 라벨 내용의 제한

회원국들이 우려하는 마지막 사안은 생산자들이 제품 라벨에 특정한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EU는 보호된 특정한 이름뿐만 아니라 단맛이 없는(dry) 또는 보유한(reserve)과 같은 단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WTO Doc G/TBT/M/66, 2015). 태국의 새로운 규칙은 소비자의 오인, 소비의 조작,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단어 및 이미지 사용의 금지, 특히 운동선수, 가수, 예술가 및 카툰 그림의 사용을 금지한다. 특정 WTO회원국들은 해당 규칙, 정의, 다른 경제 운영자들 간 해석상의 상이함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지식재산 침해의 발생과 같은 정확성의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WTO Doc G/TBT/M/63, 2014). 미국은 모호한 언어와 각 경제 운영자들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과도한 집행에 관한 우려로 계속하여 항의하였다(WTO Doc G/TBT/M/71, 2017). 뉴질랜드는 미국과 같은 이유로 실행불가능하다고 설명하였다(WTO Doc G/TBT/M/71, 2017).

태국의 라벨은 해당 규칙이 정당화되기 위해 과학적·기술적 정보를 요구하는 미국을 포함한 회원국들로부터 필요한 것보다 더 무역제한적임이 입증되었고(WTO Doc G/TBT/M/71, 2017), 멕시코는 해당 조치가 태국의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더 제한적이며, TRIPS협정과 생산자의 지적재산권 위반을 구성할 수 있음 또한 강조하였다(WTO Doc G/TBT/M/63, 2014).

주류 라벨을 제한하는 태국의 새로운 마케팅 규칙은 시행되었고, 태국은 해당 규칙이 지적재산권을 위반하지 않고 국제무역에 장애가 되지 않음을 주장하며 해당 조치가 다른 국가의 조치와 일치함을 언급하고 있다.

## IV. 알코올 라벨링과 TBT협정의 조화 가능성

### 1. 알코올 라벨링과 TBT 제2.2조

알코올 라벨링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의해 고려되어지는 기술규정인 TBT 제2.2조<sup>1)</sup>는 논쟁의 주된 핵심이다.

향소기구는 참치II사건과 COOL사건을 통해 제2.2조가 단순히 무역 제한적인 효과를 갖는 조치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WTO Doc WT/DS381/AB/R, 2012; 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해 채택된 기술규정이 그 기여도를 충족시키기에 필요 이상의 방법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에 한해 금지된다는 것이다(WTO Doc WT/DS381/AB/R, 2012). 제2.2조하에서 기술규정이 필요한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인지 여부의 평가는 다음 요소들의 '비교형량(weighing and balancing)'이 수반된다.: (i) 해당 사안의 정당한 목적을 위한 해당 조치의 기여도; (ii) 해당 조치의 무역제한성; (iii) 해당조치를 통해 회원국이 추구한 목적의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결과의 중대성과 해당 사안에서의 위협의 본질(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일반적으로, 하나의 조치가 필요한 것보다 더 무역 제한적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대안적 조치를 비교한다.

아래에서는 TBT협정하에서 알코올 라벨링의 국제적 조화 가능성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회원국은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할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갖도록 기술규정을 준비, 채택 또는 적용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술규정은 비준수에 의해 야기될 위협을 고려하여, 정당한 목적수행에 필요한 이상으로 무역을 규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당한 목적은 특히 국가안보상 요건, 기만적 관행의 방지, 인간의 건강 또는 안전, 동물 또는 식물의 생명 또는 건강, 또는 환경의 보호이다. 이러한 위협평가시 고려할 관련 요소는 특히 이용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정보, 관련처리기술 또는 상품의 의도된 최종 용도이다.

### 1) 조치의 기여

제2.2조하에서 알코올 라벨링 관련 주요 논쟁은 공중보건을 목적으로 한 특정한 라벨링 조치의 기여도이다. 향소기구는 US-COOL 사건에서 하나의 조치가 최소한의 준수 요건을 충족시킬 것이 요구되진 않지만(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해당 조치가 알코올 관련 피해를 줄이는 정당한 목적에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는 것으로써 나타나야 함을 지적하였다. 해당 조치에 의한 기여는 조치의 적용과 관련된 증거뿐만 아니라 해당 조치의 디자인, 구조 그리고 운영을 참조함으로써 확인된다.(WTO Doc WT/DS381/AB/R, 2012; 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분쟁의 측면에서 기여의 문제와 관련된 증거가 가장 논쟁의 여지가 많은 것 중 하나이므로 알코올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목적의 경고 라벨의 기여를 평가하기 위해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필요한지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 (1) 경고라벨의 효과에 대한 증거

증거의 종류에 관해서, US-COOL사건에서 향소기구는 정량적 증거가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성적이고 다른 형태의 과학적 증거로도 충분함을 명확히 하였다(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건강 경고 라벨이 알코올의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진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벨은 두 개의 메커니즘 중 하나를 통해 알코올의 위해성을 줄이는 것에 기여한다. 첫째, 라벨은 개인의 음주 행위를 변화시키도록 유도한다. 둘째, 라벨은 알코올을 유해한 상품으로 마케팅을 하므로 표현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알코올의 문화적 수용성과 음주규범을 바꿀 수 있다. 하나의 조치를 주장하는 회원국은 해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현재의 증거를 기초로 하여, 라벨이 위해성을 줄임에 기여한다는 방법을 표현할 때 첫 번째 메커니즘을 사용할 개연성이 더 크다. 두 번째 메커니즘이 더 강력한 라벨의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논쟁에도 불구하고 지금

까지 두 번째 메커니즘을 지지하는 연구는 없었다.

또한 첫 번째 메커니즘하에서 알코올 라벨링이 음주습관을 바꿀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용 가능한 자연실험증거로는 미국의 연구뿐이고, 이것 또한 소비감소를 증명하지는 않는다. 해당 연구는 음주의 위험에 대해 대화나 음주습관을 변화시키는 목표, 음주운전을 단념시키는 행위와 같은 매개변수(intervening variable)들이 음주습관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CFR Title 27, §16.21, 2006).

## (2) 특정 위해성에 대한 경고라벨의 정확성에 관한 증거

경고라벨이 일반적으로 알코올의 위해성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경고 메시지의 특정 내용과 관련하여 광범위한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해당 논쟁은 경고 메시지 상의 특정 내용이 실제로 부정확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만약 라벨링 조치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각 메시지에 결함이 있다면, 해당 목적을 위한 라벨링 조치의 전체 기여도는 줄어들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 라벨링 조치와 관련하여 피인용국이 라벨의 사용이 소비자에게 혼돈을 준다거나 소비자들에게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보건을 향상시킬 수 없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음주운전, 임신 중 음주 또는 미성년자 음주와 관련된 메시지에 대해서는 사실의 부정확성을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음주와 운전 관련 메시지를 반대하기에는 지금 현재 그 증거가 너무 강력하여 주요 주류 생산자들은 2020년까지 포장 상에 그 위험과 관련된 심볼(symbol)을 포함할 것을 약속하였다. 마찬가지로, 음주의 위해성으로 음주행위가 태아알코올중후군(foetal alcohol spectrum disorder)과 관련 있음이 지난 몇 년 동안 증명되었다. 장애를 유발하는 소비량과 소비시기에 대해서는 알아내지 못하였지만, 해당 산업은 그 포장에 '임산부(pregnant woman)' 심볼을 포함할 것을 약속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의 두 경고는

두 그룹 즉 장래의 운전자와 임신 중 여성을 겨냥하고 있기에, 일반대중이 주류를 소비함에 있어 주류 산업의 이익에 상당한 위협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정 경고 메시지에 대한 논쟁은 암이나 다른 심각한 위해 또는 질병이 언급되었을 때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이다(Austen, 2018). 알코올 섭취와 특정 위해성 간의 관련성에 대한 증거는 사실의 부정확성을 반증하기에 중요할 것이고, TBT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부분의 메시지들은 주류과학(mainstream science)에 의해 지지된 알코올의 위해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Petticrew, Maani, Knai and Petticrew, 2017).

## 2) 무역 제한성

경고 라벨의 '무역 제한 효과'는 비교적 낮은 무역 제한의 정도를 구성한다. 그러나, 알코올 경고에 대한 한 회원국의 광범위한 수단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과 수입제품에 대한 접근에 있어 경쟁의 기회를 제한하는 무역제한적인 조치가 된다(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특히, 까다로운 방식과 배치 요건을 준수하며 특정 국내시장에 진입하고자 한다면, 생산자들은 그들의 제품에 더 많은 변화를 가해야 할 수도 있다. 게다가, TBT위원회의 미팅에서 야기된 순차적 교대요건(rotation requirement)과 유통기한이 긴 제품에 대한 우려는 그러한 요건들이 더 많은 무역 장벽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회원국들이 주 라벨이 아닌 스티커에 추가로 건강 정보를 명시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고려하면, 인도처럼(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이러한 유연성의 허용을 거절한 일부 국가들과의 무역 제한성에 대한 잠재적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 3)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 (Alternative)

제소국은 해당 조치의 목적을 충족하고 동등한 기여도를 구성하는 알코올 라벨링 요건과



관련한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을 확인할 것이고 (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덜 무역제한적인 대안은 피제조국이 합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WTO Doc WT/DS381/AB/R, 2012; WTO Doc WT/DS381/AB/R, 2012; WT/DS386/AB/R, 2012). 이렇게 된다면, 현재의 피제조국 조치는 ‘대안적인 것’으로써 고려되지 않을 것이다(WTO Article 20). TBT위원회 미팅 회의록에서 언급된 라벨링 요건에 대한 가장 확실한 대안은, 라벨에 포함된 위험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공교육 또는 학교교육을 하는 것이다(WTO DOC G/TBT/M/51, 2010; WTO DOC G/TBT/M/61, 2013). 공교육 또는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해당 산업은 해당 프로그램들로 인한 부담은 덜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으로 음주습관을 변화시키기에 있어서는 성공적이지 않음은 연구들에서 보여주고 있다(Bohar, 2010). 알코올 관련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경고 라벨이 공중보건에 주요한 기여를 하지 못하는 것과 같이, 해당 교육프로그램이 경고 라벨과 동등한 기여를 한다는 것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경고 라벨과 교육 프로그램 모두 대중에게 알림으로써 대중의 음주방법을 변화시킬 것을 추구하지만, 알코올을 구매하고 소비할 경우, 과거 보았던 또는 들었던 교육적 메시지보다 경고 라벨에 의한 근접성이 더욱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른 대안은 산업 자체규제 라벨링 제도, 특정 메시지의 생략, 덜 부담스러운 외형(제공 방식), 배치 또는 순차적 고대요건을 포함한 수정된 라벨링 제도가 있을 수 있다. 하나의 가능한 대안은 메인 라벨이 아닌 보충라벨이나 스티커에 경고를 나타내는 것이다. 많은 회원국들이 TBT위원회에 이러한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WTO Doc G/TBT/M/64/Rev.1, 2014). 해당 제안은 생산자들이 모든 시장에 동일한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을 가지게 하고, 특정 시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스티커를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자들에게 덜 무역제한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O'Brien, Gleeson, Room and Wilkinson, 2017). 메인 라벨에 비해 보충라벨이나 스티커를 사용하는 것이 경고의 실효성이 있는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없다. 그러한 증거는 보충적인 라벨에 있는 경고가 메인 라벨에 있는 경고와 동등한 기여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할 수 있다.

## 2. 국제표준과 TBT 제2.4조

TBT협정 제2.4조는 “기술규정이 요구되고 관련 국제표준이 존재하거나 그 완성이 임박한 경우, 회원국은 예를 들어, 기후적 또는 지리적 요소나 근본적인 기술문제 때문에 그러한 국제표준 또는 국제표준의 관련부분이 추구된 정당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비효과적이거나 부적절한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국제표준 또는 관련부분을 자국의 기술규정의 기초로서 사용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조항은 메인 라벨이 아닌 보충라벨 또는 스티커로 성분표나 영양정보와 같은 특정 건강정보(country-specific health information)를 허용하지 않는 건강 정보 라벨링 조치에 대한 이의 제기에 원용 될 수 있다. EU와 일본을 포함한 몇몇의 국가들은 Codex Standard 1-1985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가 메인 라벨링과 관련 있는 국제표준임을 주장한다. 제 8.2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제8.2.1조 원 라벨의 언어가 의도된 소비자에게 적용가능하지 않다면, 소비자가 요구하는 언어로 강제 정보를 포함한 보충라벨이 재라벨링되는 것 대신 사용되어야 한다<sup>2)</sup>; 제8.2.2조 재라벨링되거나 보충라벨의 경우, 제공된 강제 정보는 원 라벨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sup>3)</sup>

2)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Standard 1-1985, Clause 8.2.1 : If the language on the original label is not acceptable to the customer for whom it is intended, a supplementary label containing the mandatory information in the required language may be used instead of relabelling.

3)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Standard 1-1985, Clause 8.2.2 : In the case of either relabelling or a supplementary label, the mandatory information provided shall fully and accurately reflect that in the original label.

알코올 건강 라벨과 관련하여 TBT협정 제 2.4조하에서의 중요한 쟁점은 Codex Standard 1-1985가 해당 라벨링 조치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시키기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이며, 해당 조치와 '관련' 있는지 여부이다. 첫째, Codex Standard 1-1985가 국제 표준으로 고려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표준'은 (a)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b)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닌' 문서이다(TBT협정 부속서 1.2). (a)의 의미에서, Codex Standard 1-1985는 1963년에 설립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졌고, EU를 포함한 189개국 회원국이다. 해당 위원회의 기본 임무는 국제식품무역의 안전성, 품질 그리고 공정성에 기여하는 국제식품표준, 가이드라인 그리고 업무규정에 일치하는 국제규격을 발전시키는 것이다. 해당 위원회의 표준화 승인 활동과 회원자격은 모든 WTO 회원들에게 오픈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 되어진 기구로써, WTO 항소기구의 표현, '승인된 기관'에 명확하게 부합한다((WTO Doc WT/DS381/AB/R, 2012). 해당 위원회는 SPS협정 제3.4조에서의 '표준'과 관련하여서도 인정되어진다. (b)의 의미에서, 해당 위원회 표준의 준수는 그 회원국의 전적인 자발성이다.

그러나, Codex-Standard 1-1985가 제2.4조의 목적으로 '국제표준'이라 할지라도, 위에서 인용된 전체표준과 조항이 알코올 건강 정보 라벨링과 반드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WTO 항소기구는 특정 기술규정에 적절하거나 관계가 있다면, 해당 국제표준은 기술규정과 관련 있음을 나타내었고(EC-Sardine), 따라서 Codex-Standard 1-1985는 '식품'에 적용되고 주류에 적용될 것이다(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Standard 1-1985, Clause 2). 표준의 기본적인 원칙은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기만적이거나 식품의 특성과 관련하여 잘못된 인상을 일으킬 수 있는 라벨링을 방지하는 것이다(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Standard 1-1985, Clause 3.1). 그리고 Codex-Standard 1-1985는 식품명, 성분표, 실험량과 고품량, 제조업자명과 주소, 식품공급사슬에 있는 다른 이해관계자, 원산지, 품목식별, 일부인(date marking), 저장지시 그리고 사용방법을 포함하

여 포장식품에 대한 강제적인 라벨링 요건에 사용된다(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Standard 1-1985, Clause 4). 또한 이것은 특정 성분의 정량적 라벨과 이온화방사선(ionising radiation)이 있는 식품의 처리 방법을 제공한다(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Standard 1-1985, Clause 5). 표준은 Codex-Standard Clause 8.2를 포함하여 정보의 가독성 및 가시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제공방식 또한 포함하고(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Standard 1-1985, Clause 8.1), 이것이 강제된 표준 요건과 일반적인 원칙에 모순되지 않는 한, 미리 포장된 식품에 표시될 수 있는 다른 '선택적' 정보로 인정된다(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odex Standard 1-1985, Clause 7).

Codex Standard 1-1985가 식품의 성분표 및 일부인에 대한 규칙을 확립한다면, 이것은 인도가 성분표 및 품질유지기간(best before date)을 강제하였던 것처럼 알코올 라벨링 제안과 관련되어진다. 그러나, Codex Standard는 인도가 요구한 다른 라벨링 정보 예를 들면 성분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에 그러한 정보는 관련된 것으로 고려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인도의 성분표 및 품질유지기간 요건에 한정해 제8.2조의 보충적 라벨링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충적 라벨링 표준은 소비자들이 원 라벨의 언어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사용되도록 명시하고 있고, WTO회원국들이 표준으로써 적용하는 상황을 의도하지 않는다. 이것은 주 라벨과 다른 언어의 라벨이 필요하기 때문이 아니라 상업적·교역적 조건에서 더욱 유익하기 때문에 인도처럼 보충적 라벨링을 사용하기 위해 적용된다. 그러므로 Codex Standard 1-1985는 알코올 성분표 및 품질유지기간에 대한 인도 라벨링 규칙 어디에도 관련이 없다.

비록 Codex-Standard 1-1985가 경고와 영양 정보를 포함하여 주 라벨에 보충된 모든 건강 정보의 형태를 다루진 않지만, 식품명, 성분표, 수입자 정보 그리고 품질유지기간과 같은 일부 정보는 다루고 있고, 동시에 Codex-Standard 1-1985 제8.2조는 메인 라벨에 사용된 것과 다른 언어의 사용을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경우, 스

티커를 사용할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것은 회원국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Codex-Standard 1-1985 제8.2조가 TBT위원회에서 증가된 주류 라벨링 문제와 관련된 표준이 아님을 시사한다. Codex-Standard 1-1985 제8.2조가 표준과 관련있다 하더라도, 각 회원국의 국내여건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적절한 방법을 보충적인 라벨링에 적용한다면, 이러한 표준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TBT 제2.4조의 위반을 구성하지 않는다.

## V. 결론

많은 국가들이 알코올에 다양한 형태의 건강 정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태국이나 인도 등과 같은 국가에서는 알코올이 가진 유해성 및 잠재적인 위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라벨링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주요 주류 수출국들은 반대의 입장을 TBT위원회에서 표명하였고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많은 제안들이 TBT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주류 산업은 라벨링과 같이 정부가 알코올을 규제하는 것을 선호하진 않지만, 주류의 특정 건강정보에 대한 모든 라벨링 조치에 대해 반대하지는 않는다. TBT위원회 미팅의 회의록은 회원국들과 해당 산업에서 알코올 라벨링에 대해 무엇을 반대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음주와 관련된 심각한 위험을 남기는 메시지; 그러한 메시지를 동반한 그래픽 사진; 보충적 라벨로써 사용된 정보를 약화시킬 수 있는 메시지에 대한 거절의 허용; 그리고 친알코올 마케팅 메시지에 대한 반대. 이러한 특징들의 어느 것도 해당산업의 자발적인 라벨링 제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공중보건의 혁신을 원하는 국가들은 알코올 라벨링의 증거기반이 담배처럼 강하지 않기에 적극적으로 담배의 유해함을 나타내는 라벨링과 동일한 라벨을 알코올에 적용할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해 있지만, 만약 어떤 조치가 알코

올 라벨링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현재 존재하는 증거를 반영하기 위해 고안된다면, 그러한 조치는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제한을 만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알코올 라벨링에 대한 국제적인 조화는 TBT협정의 기술규정 또는 표준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용가능할 것이다. 특정 회원국이 알코올 라벨링의 사용을 위해 기술규정을 원용하기에는 그 정당성이 아직은 부족해 보인다. 따라서 TBT 협정 제2.2조를 원용하기 보다는 국제적인 표준의 도입으로 알코올에 대한 위해성을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WHO는 국제표준으로써 Codex가 건강관련 알코올 라벨링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발전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WHO는 새로운 작업들로 다음을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류의 정의, 제품 정보, 정보로부터의 건강경고와 제한 그리고 건강에 위험함을 나타내는 포장과 관련한 Codex Standard 1-1985의 수정; 건강영양 강조 표시에 대한 현존하는 Codex 지침에 대한 수정; 그리고 건강 위험을 나타내는 포장과 정보의 제한에 대한 새로운 Codex 지침의 성립. WHO는 또한 경고에 대한 표준이 발암성, 중독효과, 잠재된 의존성, 소아청소년, 그리고 임신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Codex 표준의 이러한 변화는 알코올 라벨링에 대한 경고와 다른 건강정보의 도입을 위한 각국의 노력이 국제적으로 지지되어지는 구체적인 원칙으로써 국제적 조화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알코올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라벨로 표시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것은 정보의 획득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하지만 일부 국가들이 알코올관련 위해성을 라벨링 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최근 TBT위원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되었고, 이로써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당 부분에 대한 연구가 존재하지 않고 있기에 TBT위원회 회의에서 논의 및 제안된 내용만을 인용할 수밖에 없어 해당 논문에서 발전적인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 References

- Austen I. (2018), “Yukon Government Gives In to Liquor Industry on Warning Label Experiment”,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18/01/06/world/canada/yukon-liquor-alcohol-warnings.html>.
- Babor, T. F.(2010), *Alcohol: No Ordinary Commodity*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 Beer Wine Spirits (2016), *Providing Consumer Information and Responsible Product Innovation*.
- CFR Title 27 – Alcohol (2006), *Tobacco Products and Firearms*, §16.21 (Mandatory label information).
-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1981), *General Standard for the Labelling of Prepackaged Foods* (Codex Standard 1-1985, adopted 14th session 1981, as revised 19th session, 1991).
- Department of Health, Australia (2018), *Tobacco Control Key Facts and Figures*.
- European Alcohol Policy Alliance (2010), *Thailand Notifies WTO Members of Plans to Introduce Alcohol Warning Labels*, 9.
- Foundation for Alcohol Research and Education (2011), *Alcohol Product Labelling: Health Warning Labels and Consumer Information*, AER Foundation Policy Position Paper.
- International Alliance for Responsible Drinking (IARD) (2018), *Beverage alcohol labeling requirements*. Retrieved from <http://www.iard.org/resources/beverage-alcohol-labeling-requirements/>.
- International Organisation of Vine and Wine (2017), *2017 World Vitiviniculture Situation-OIV Statistical Report on World Vitiviniculture*.
- Kettil B. (1975), *Alcohol Control Policies in Public Health Perspective*, Rutgers University Center of Alcohol Studies, 12.
- Lim, S. S and T, Vos and A. D. Flaxman and D. Goodarz and S. Kenji and A. R. Heather et al, (2012) “A Comparative Risk Assessment of Burden of Disease and Injury Attributable to 67 Risk Factors and Risk Factor Clusters in 21 Regions, 1990-2010: A Systematic Analysis for the Global Burden of Disease Study 2010,” *The Lancet*, 380, 2223-2250.
- O’Brien P. and D. Gleeson and R Room and C. Wilkinson (2017), “Marginalising Health Information: Implications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for Alcohol Labelling”, *Melbourne University Law Review*, 41, 361-363.
- Petticrew M and H. N. Maani and C. Knai and E. Weidemann (2017), “How alcohol industry organisations mislead the public about alcohol and cancer”, *Drug and Alcohol Review*, 37, 293.
- Public Health England (2016), *The Public Health Burden of Alcohol and the Effectiveness and Cost-Effectiveness of Alcohol Control Policies: An Evidence Review*.
- Room R. and J. Rehm and C. Parry (2011), “Alcohol and Non-Communicable Diseases(NCDs): time for a serious international public health effort”, *Society for the Study of Addiction*, 106, 1547.
- Room R. (2010), “The long reaction against the wowser: The prehistory of alcohol deregulation in Australia”, *Health Sociology Review*, 19, 151-163.
- TBT Committee, Minutes, WTO Doc G/TBT/M/50~52(2010), 53~55(2010), 56~58(2012), 59~61(2013), 62~64(2014), 65~67(2015), 68~70(2016), 71~73(2017).
- Tigerstedt C. (1999), *Alcohol Policy, public health and Kettil Bruun*, *Contemporary Drug Problems*, 26, 209-235.
- United European Gastroenterology (2017), *Alcohol and Digestive Cancers Across Europe: Time for Change*.

Voon Tania, Exploring the Meaning of Trade-restrictiveness in the WTO, World Trade Review, Vol.14, 2015.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0), Global Strategy to Reduce the Harmful Use of Alcohol, WHO Doc WHA63/2010/REC/1.